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교육기관 업무 지침

제정 2022. 9. 28. 개정 2024. 4.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문인력"이란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로서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2. "전문교육"이란 제1호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3. "계속교육"이란 전문인력 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 4. "시험위원"이란 고시 제6조제3항의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한 평가(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를 위한 출제위원, 검토위원, 선정위원, 채점위원, 감독위원 등을 통칭하여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교육 등 운영

- 제3조(교육계획 수립 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매년 3월까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세부 교육 계획을 수립·확정한다.
- ② 제1항의 세부 교육계획에 따른 전문교육·계속교육·인증시험 일정, 교육·인증시험의 신청 방법 및 기간 등을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4.23.>
- 제4조(전문교육 운영)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및 기술, 영향평가 이론 및 실습 등으로 구성하며 집체(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전문교육을 신청하려는 자는 한국인터넷진홍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교육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한국인터넷진홍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인터넷진홍원은 신청자의 전문 인력 자격기준을 심사하여 교육생을 선정할 수 있다.<신설 2024.4.23.>
- ④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문교육 신청자에게 [별표 1]의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전문교육 신청자는 기한 내에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납부받은 교육비는 해당 전문교육 시작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교육 시작 이후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인터넷 진흥원에 그 사유를 알리고 다음 차수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차수의 전문교육으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4.04.23.>

- ⑥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4항의 교육비를 납부하고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개정 2024.04.23.>
- 제5조(계속교육 운영)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고시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에 대한 계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24.04.23.>
- ④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계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제10조에 따른 인증서를 갱신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장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시험 운영

- **제6조(응시자격 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고시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 이수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전문교육 이수자는 전문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최대 3회의 인증시험 응시기회를 갖게 되며, 1년의 응시기간 이내에 인증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응시 기회는 자동 소멸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응시기회 보유자로서 응시기간 이내에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유를 알리고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차수의 인증시험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
- ④ 응시기회 보유자는 인증시험 신청일 기준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전문 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인증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개정 2024.04.23.>
- 제7조(인증시험 응시) ① 인증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신청기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문 인력 인증시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4.23.>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시험 응시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응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인증시험 응시자가 신청기간 이내에 인증시험 신청을 취소하지 않거나 인증시험 당일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응시 기회를 1회 차감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시험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유를 알리고 응시 기회를 차감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응시 기회를 차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시험문제 출제 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문제출제 등 인증시험 운영을 위해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시험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시험 관련 정보를 유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인증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별표 2]의 문제출제 기준에 따라 필기시험 3과목은 각 객관식(선택형) 20개 문항으로 구성하고, 실기시험 1과목은 주관식(서술형) 5개문항으로 구성하여 시험위원으로 하여금 채점하도록 한다.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증시험 문제출제 서식으로 문제출제를 의뢰할 수 있다.
- ④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증시험 문제출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제출제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다.
- ⑤ 인증시험의 문제 및 정답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⑥ 고사장 감독을 위해 위촉된 시험위원은 과목별 시험 실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감독위원 인계인수조서를 작성하여 고사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최종합격자 발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별표 2]의 인증시험 합격기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 제10조(전문인력 인증서 교부 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9조에 따른 최종합격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문인력의 인증서 교부 및 유효기간, 계속교육 이수에 따른 인증서 갱신 교부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공기관이 영향평가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제7호 서식]의 전문인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증시험을 무효처리하며, 해당 응시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부정행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1. 인증시험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 2. 인증시험이나 전문교육 과정에서 녹취 또는 촬영(동영상, 사진 포함)하는 경우
 - 3. 인증시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설·유출한 경우
 - 4. 본인이 아닌 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인증시험에 응시한 경우
 -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로서 전문인력 인증서 취득 과정을 무효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에 의거하여 [별표 3]의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기준을 정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규정)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별표 4]의 교육강사 및 시험위원 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내부 직원이 시험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별표 4]의 지급기준을 준용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22. 9.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4. 23.>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 운영 및 이수기준

구 분	교육방식	교육일수	교육비	이수기준
저무교으	집체교육	5일	44만원	총 교육시간의 90%
전문교육 	온라인교육) 근	33만원	이상 참석 시
게소교으	집체교육	1일	-	총 교육시간의 100%
계속교육 	온라인교육	l i	-	참석 시

[※] 교육비는 교재비, 배송비(온라인교육인 경우), 식대(집체교육인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별표 2] 인증시험 문제출제 및 합격기준

시험과목	문제유형	문항수	배점	합격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필기(객관식)	20개 문항	20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및 보안기술	필기(객관식)	20개 문항	20점	총점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론	필기(객관식)	20개 문항	20점	80점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기	실기(주관식)	5개 문항	40점	

[※] 영향평가 실기시험(5개 문항) 중 1개 문항은 전문교육 실습과제로 대체함

[별표 3]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기준

장애 종류 및 정도		편의제공 내용 및 방법		
	상지 중증	시험시간	·시험시간 1.5배 연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답안작성 방법	· 답안 대필	
	장애인)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상지 경증	시험시간	·시험시간 1.2배 연장	
지체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답안작성 방법	· 답안 대필	
	않은 장애인)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하지			
	(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시험시간	·시험시간 1.5배 연장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답안작성 방법	· 답안 대필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시험시간	・시험시간 1.7배 연장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문제인지방법	•확대 문제지	
		(택1)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시각 장애		답안작성방법	· 답안 대필	
시축 경예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거즈	시험시간	·시험시간 1.5배 연장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문제인지방법	•확대 문제지	
	(영예의 정보기 점여지 않은 장애인)	(택1)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LOC OTIL!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ㆍ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청각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보청기 사용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	

- ※ 편의제공사항은 응시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 실기시험으로 간주되는 실습과제(1개 문항)의 제출시간은 장애 종류별 시험시간과 동일하게 연장함
-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 복합(상지+하지) 지체장애의 경우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한 기준으로 편의를 제공함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제출서류(택1)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별표 4] 교육강사 및 시험위원 대가 지급기준

구 분			비용	비고		
	강사료			200,000원	1시간 기준	
교육 강사		원고료		10,000원	200자 원고지 1장 또는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용	
	감수료			5,000원	1장 기준 ※ A4용지 1장은 원고지 4장으로 계산함	
			단순질의	15,000원		
	출제위원	필기시험	복합응용	20,000원	1개 문항 기준	
			상황판단	50,000원	기계 군장 기군	
		실기시험		100,000원		
	검토위원		필기시험	10,000원	1개 묘하 기조	
시험 위원			실기시험	30,000원	- 1개 문항 기준	
112	선정위원			100,000,91	1117년 기조	
	채점위원(실기시험)			100,000원	1시간 기준	
	본부		부감독	150,000원		
	감독위원	고사	장감독	100,000원	시험일(1일) 기준	
	복도감		- - - -	80,000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교육 신청서

인적	성 명			소속				
사항	휴대폰			이메일				
		자 격 명		주관기관		취득	·일자	
	□ 감리	원(ISA)	한국지	능정보사회	진흥원	년	월	일
	□ 정보	관리기술사	한국	구산업인력공	· 단	년	월	일
	□ 컴퓨	터시스템응용기술사	한글	구산업인력공	;단	년	월	일
	□ 정보	통신기술사	한국	?산업인력공	;단	년	월	일
	□ 전자:	계산기조직응용기사	한글	구산업인력공	강단	년	월	일
	□ 정보	처리기사	한글	구산업인력 공	강단	년	월	일
자격	□ 정보.	보안기사	한국방	송통신전파	진흥원	년	월	일
사항	□ 정보	통신기사	한글	구산업인력공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CISA)		시스템감사 on Systems A ntrol Association	udit and	년	월	일
		□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 (CISSP)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 (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		년	월	일
	□ 개인	정보관리사(CPPG)	<u>ই</u>)국CPO포립	3	년	월	일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ISMS-P) 인증심사원	한글	구인터넷진흥	5원	년	월	일
	□ 기타					년	월	일
	분야	□ 개인정보 보호 공통 □ 시스템·네트워크 보	투기반기술(⁹ L호]증기술 등 응용서비스			
경력 사항	업무	□ 계획□ 분경□ 유지·보수□ 감] 설계] 컨설팅	□ 개빌 □ 연구	t '·개발		
	기간	년	개월	※ 상기의	자격 취득	일 이후 경	력만 인	.정
되는 자격(만약,	본 교육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른 수행인력 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며, 상기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일 기준으로 자격이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교육 수강이 불가합니다. 만약, 전문교육 수강 후 자격사항 및 경력사항의 오류, 거짓 등이 확인된 경우 교육수강이 무효 처리되며 이와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신청하겠습니다.							
		한-	국인터넷	진흥원	귀하	년 -	원	일
첨부 서류		사항 증빙서류(자격번호, 사항 증빙서류(재직증명					나본 등	-)

발급번호: 0000-000

교육이수증

소 속:

성 명:

교육기간: 0000.00.00 ~ 0000.00.00

교육시간: 00시간

위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00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시험 신청서

인적	성 명			소속	, ,			
사항	휴대폰			이메일				
	자 격 5	d d	'	주관기관		취득	일자	
	□ 감리원(ISA)		한국지	등정보사호	회진 흥 원	년	월	일
	□ 정보관리기술시	-	한국	산업인력	공단	년	월	일
	□ 컴퓨터시스템응	·용기술사	한국	산업인력	공단	년	월	일
	□ 정보통신기술사	-	한국	산업인력	공단	년	월	일
	□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한국	산업인력	공단	년	월	일
	□ 정보처리기사		한국	산업인력	공단	년	월	일
자격	□ 정보보안기사		한국방숙	·통신전피	파진흥원	년	월	일
사항	□ 정보통신기사		한국	산업인력	공단	년	월	일
	□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CISA)		(Informatio	ト스템감시 on Systems rol Associa	나통제협회 Audit and tion)	년	월	일
	□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 (CISSP)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 (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		년	월	일	
	□ 개인정보관리사	·(CPPG)	한	국CPO포	럼	년	월	일
	□ 정보보호 및 7 관리체계(ISMS-F		한국	인터넷진	흥원	년	월	일
	□ 기타					년	월	일
	분야 □ 개인정 □ 시스템	보 보호 공통 ·네트워크 보	·기반기술(임 .호		인증기술 등 응용서비스			
경력 사항	업무 □ 계획 □ 유지·	□ 분 ^소 보수 □ 감리		설계 컨설팅	□ 개빌 □ 연구	· ··개발		
	기간	년	개월	※ 상기의	의 자격 취득	일 이후 경력	부만 인	정
본 시험은 개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향평가 전문교육을 수료한 자만 응시가 가능하며, 상기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일 기준으로 자격이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인증시험 응시 후 자격사항 및 경력사항의 오류, 거짓 등이 확인된 경우 시험 응시가 무효 처리되며 이와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신청하겠습니다.								
년 월 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귀하								
첨부 서류	1. 자격사항 증빙서 2. 경력사항 증빙서]류(자격번호,]류(재직증명/	유효기간, 서, 프리랜서	취득일이 의 경우	확인 가능한 계약서 사본	는 자격증 시 등)	본 등)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시험"의 시험위원(출제위원, 검토위원, 선정위원, 채점위원, 감독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시험문제와 답안, 시험방식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 업무 종료 후에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2. 본 업무의 시험 관련 정보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 3. 본 업무가 완료되거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 관련 자료를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반납 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다.
- 4. 업무 종료 시 본인은 시험정보 및 제반사항 등을 종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 5.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유사업무 참여제한 등의 제재와 손해배상도 감수한다.

년 월 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귀하

인증시험 문제출제 의뢰서

	□ A. 개인정보 보호법	출제자	
시험	□ B.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및 보안기술		□ 단순질의
과목	□ C.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론	문제 유형	□ 복합응용
	□ D.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기(서술형)		□ 상황판단
키워드		난이도	□ 상 □ 중 □ 하
출제 의도			
질 문			
본문 내용			
보 기 (선택형)	① ② ③ ④ ⑤		
정 답			
정답 해설			

감독위원 인계인수조서

[20 년도 제 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시험]

과목명		
고사장	감독위원	(인)
고시	(인계자)	(인)

그ㅂ	스 려		비고			
구분 수령	사용	폐기	미사용	계		
문제지						
답안지						

응시자 명 결시자 명 부정행우	자 명
------------------	-----

	결시자 명단							
순번	수험번호	성명	순번	수험번호	성명			
1			6					
2			7					
3			8					
4			9					
5			10					

	부정행위자 명단								
순번	수험번호	성명	순번	수험번호	성명				
1			4						
2			5						
3			6						

인 수 자 : (인)

인증번호: 제0000-000호

인 증 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성 명:

생년월일: 0000.00.00

유효기간: 0000.00.00 ~ 0000.00.00

위 사람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시험에 합격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갱신안내)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라 인증서 효력이 유지되도록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2년이 경과 후 1년 이내 계속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0000년 00월 00일

한국인터넷진흥원

확인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성 명:

인증번호 : 제0000-000호

유효기간 : 0000.00.00 ~ 0000.00.00

위 사람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임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정행위 사실확인서					
20 년도 제 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인증시험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부정한 방법 및 내용(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수험번호		생년월일		성 명	(인)
□ 적발경위(6하원칙)					
* 붙임 : 증거물					
감독위원1		(인)	감독위원2		(인)
			본부위원		(인)
한국인터넷진흥원					